

감 사 원

심 사 결 정

분 류 번 호 2016-심사-58

제 목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

청 구 인 A

㉠시 ㉡구 ㉢로 *번길

대리인 ◇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B

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○본부장

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원 처분의 요지

가. 청구인은 1995. 6. 14.부터 2001. 8. 31.까지 △¹⁾에서 사상공(용접흡)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인 1998. 2. 16.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애 11급으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△으로 한 평균임금(43,195원 43전)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장애일시금을 지급받았다.

나. 청구인은 2003. 1. 14.부터 같은 해 2. 28.까지 45일 동안 ▲²⁾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였다.

다. 이후 청구인은 2003. 6. 30.과 2004. 8. 10. 진폐정밀진단결과 각각 장애 5급과 3급으로 상향되어 장애일시금 차액분 및 장애연금 4년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2007. 5. 10. 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△으로 한 평

1) ㉠시 ㉡구 ㉢동에 있던 기타금속제품제조업과금속가공 업체

2) ㉠시 ㉡구 ㉢로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

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다.

라. 이에 청구인은 2014. 5. 8. 처분청에 ▲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조사하여 재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해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다.

마.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. 9. 30. ▲의 근무기간이 45일에 불과하여 주된 사업장을 △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(이하 “이 사건 거부처분”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.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

가. 청구 취지

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라는 것이다.

나. 청구 이유

청구인의 현재 평균임금은 △을 최종 분진사업장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(43,195원 43전)을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받아 왔으나, 2003. 1. 14.부터 같은 해 2. 28.까지 ▲에 근무하였으므로 ▲을 최종 분진사업장으로 하여 ▲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우리 원의 판단

가. 다툼

이 사건의 다툼은 진폐증 악화(재요양)의 주된 유해사업장을 △이 아닌 ▲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.

나. 인정 사실

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(1)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(1988-005931)에 의하면, 사업장 명칭은 “△”, 직종은 “생산직”, 채용일자는 “1995. 6. 14.”, 부상발병일시는 “1998. 2.

16.”, 상병명은 “결핵과 연관된 진폐증”으로 되어 있다.

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. 6. 14.부터 2001. 8. 31.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 △의 사상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다.

(2) 청구인은 △ 재직 중인 1998. 2. 16.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애 11급으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△으로 한 평균임금(43,195원 43전)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았다.

이후 2003. 6. 30., 2004. 8. 10. 진폐정밀진단결과 장애등급이 각각 5급, 3급으로 상향되었고, 2007. 5. 10. 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최종 분진사업장을 △으로 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는 아래와 같다.

과거병력조회

진단일자	사업장명	정밀진단기간)	병형2)	합병증3)	심폐기능	판정결과	장애등급
1998. 2. 16.	△	1998. 3. 16. ~ 3. 21.	4A		F0(정상)	장애	11급
2001. 8. 31.	△	2001. 10. 8. ~ 10. 13.					
2003. 6. 30.	△	2003. 7. 28. ~ 8. 2.	4A		F1(경도장애)	장애	5급
2004. 8. 10.	△	2004. 10. 11. ~ 10. 16.	4A	bu	F2(중등도장애)	장애	3급
2006. 2. 11.	△	2006. 3. 13. ~ 3. 18.	4A	bu	F2(중등도장애)	장애	3급
2007. 5. 10.	△	2007. 6. 4. ~ 6. 8.	4A	em bu	F2(중등도장애)	요양	

1) 정밀진단기간(2001. 10. 8.~ 10. 13.)에는 재해자가 진단을 받지 않아 진단기록이 없음

2) 4A: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3) bu: 기포, em: 폐기종

(3) 처분청의 민원서류결정통지서(2014. 9. 29.),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(2014. 5. 2.) 및 국민연금공단 ○지역본부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2014. 4. 30.)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▲에서 2003. 1. 14.부터 같은 해 2. 28.까지 45일간 근무하였다.

다. 관계 법령 등

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2 등 [별지] 기재와

같다.

라. 판단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,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·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, 유해·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,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, 근로자가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.

살피건대, 인정사실 “(1)~(3)항”의 내용과 같이 ① 청구인이 △ 근무 당시인 1998년 2월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의 병형이 4A형으로 이미 진단받은 점, ② 진폐증의 발병 및 진행정도, 유해·위험요인에의 노출정도와 그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▲에 45일 근무한 사실이 △ 근무 당시에 발병하여 진행된 진폐증의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폐증 발병과 진행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△을 최종 분진사업장 및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「감사원법」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 . 01 . 16 .

[별지]

관계 법령 등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- 제91조의2(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,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(이하 "분진작업"이라 한다)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

-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① 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.
 1.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·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
 2. 유해·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,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
 3. 근로자가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·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
-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.
 1.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
 2.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(진폐증은 제외한다)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, 연령,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제83조의2(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)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 병형 기준,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.
-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.

[별표 11의2]

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
(제83조의2 제1항 관련)

1.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

가. 진폐병형 판정기준

- (1)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.
- (2)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(ILO)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(2000년)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(complete classification)에 따른다.
- (3) 진폐의 병형 0/1은 의증으로, 1/0, 1/1, 1/2는 제1형으로, 2/1, 2/2, 2/3은 제2형으로, 3/2, 3/3, 3/+는 제3형으로,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,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병 형		흉부 단순방사선영상
의증	0/1	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
제1형	1/0, 1/1 1/2	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2형	2/1, 2/2 2/3	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3형	3/2, 3/3 3/+	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4형	A, B, C	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

(1) 고도 장해(F3)

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45% 미만인 경우(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% 미만이어야 함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

(2) 중등도 장해(F2)

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45% 이상, 55% 미만인 경우

(3) 경도 장애(F1)

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55% 이상, 70% 미만인 경우

(4) 경미한 장애(F1/2)

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70% 이상, 80% 미만인 경우

2. 진폐장애등급 기준

진폐장애등급	구 분
제 1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
제 3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
제 5 급	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
제 7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,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
제 9 급	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애가 남은 사람
제11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장애가 남은 사람, 진폐의 병형이 제2형,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
제13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

3.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

가.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- (1)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, 감염에 의한 흉막염, 기관지염, 기관지확장증, 기흉, 폐기종(심폐기능이 경도 장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, 폐성심,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
- (2)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애(F3)로 확인된 경우
- (3)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
- (4)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

나. 진폐의증(0/1)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(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)

[별표 11의3]

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애등급 기준
(제83조의2 제2항 관련)

진폐장애등급	구 분
제 5 급	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

제 7 급	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
제11 급	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
제13 급	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

□「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」(2007. 11. 21. 근로복지공단 지침 2007-31호)

4.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

? 업무처리 절차

④ 적용사업장 사전통보 및 의견 제출

- 재해조사 주관지사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경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 판단 기준에 의해 적용사업장을 판단

※ 적용사업장 판단기준

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

② 조사결과, 근무기간, 작업환경,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

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(분진 등)사업장

※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>②>③으로 함

다만,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,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